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비씨카드㈜

2. 제재조치일 : 2025. 3. 10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개선사항 1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비상상황시 업무지속성 확보대책 운영 미흡

금융회사는 장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운용하고,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의 실효성·적정성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.

이에 따라 회사는 내규「A」에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하위 매뉴얼로「B」등 실무매뉴얼을 작성 및 운용하고 있으며, 부서별 BCP절차서를 매년 갱신하여 최신상태로 유지 및 관리하고, 정기적으로 업무연속성계획(BCP)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.

하지만 회사는 BCP의 중요기능인 핵심업무를 선정하면서 ㉮ 및 ㉯ 등 일부 업무를 누락하였고, 핵심업무로 선정한 ㉰, ㉱, ㉲ 업무의 복구목표시간은 3시간을 초과한 24시간으로 수립하였으며,

3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하는 카드업무도 정전 대응 실무지침인「B」에는 복구목표를 3시간 30분으로 규정하였고, 동 매뉴얼에 따른 절차는 카드업무에만 한정하고 있어 여타의 핵심 업무에는 활용할 수 없는 등 핵심업무 설정 및 비상대응 관련 내규 및 실무 지침 일부를 불합리하게 운영하였다.

또한 「A」 및 「B」은 담당자 연락처 등 일부 항목을 현실화하지 않고, 재해복구 훈련에는 전체 21개 VAN사 중 1개사(乙)만 참여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통합적인 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.

<조치할 사항>

따라서 회사는 핵심업무 선정 및 복구목표시간을 재검토하여 업무별 중요도에 따른 복구목표시간을 적정하게 수립하고, 관련된 내규 및 지침이 현실화 되도록 개정하며, 재해복구 훈련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, 비상상황 시 주요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.